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마을커뮤니티공간 운영위원장의 현행 임기 체제를 확대하여 마을공동체 운영의 전문성을 축적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체제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영위원장 임기 조정 (안 제2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1)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2)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3) 규제사전심사 : 대상 아님

4) 위원회 관련 사전협의 : 대상 아님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대상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를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위원장의 임기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제19조제3항에 따라 공간을 운영하는 자에 대해 운 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u>1년</u> 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 ----- ----- ----- ----- ----- <u>2년</u> ----- -----.